

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

- (주요 내용) 산업자원부(8.22)는 실물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, 정보기술 투자 등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
 - (동향) 성장, 투자 등 거시지표 측면에서 아직까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생산성 하락 움직임, 경기 양극화, 수출구조의 편중 및 교역조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
 - (구조혁신) 적정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,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, 핵심 분야의 기술개발 전략 추진,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, 물류 표준화 및 공동화 등 물류비용 절감 등 실물부문 구조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
- (영향) 실물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가능할 것임
 - 물량에 의존 및 상위 5대 품목 위주의 수출 구조,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진 등 거시경제의 흐름에 가려 있던 실물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점이 중요함
 - 고부가가치화 촉진, 기업자금난 해소, 수출구조 개선 등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실물부문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경영 환경의 개선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할 것임
- (과제) 정부 관련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실물 부문의 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이며, B2B 확산을 위해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
 - 대외 지향적 특징을 지닌 우리의 경제구조 하에서 실물부문의 구조개혁이 없이는 지속적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음
 - 그러나 실물경제의 문제점 해소는 산업자원부의 문제만이 아니며, 정보화 투자, 물류 혁신, 핵심기술개발 등은 정보통신부, 건설교통부, 과학기술부,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음
 - 또한 최근 현안인 B2B 확산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도시,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
최근 주요 정책(2000. 8. 14 ~ 8. 22)

「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」	기획예산처 (8.1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·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(2010년 완료 → 2005년 완료) · 9개 업종에서 진행중인 B2B 모델 개발 사업을 2001년부터 20개 업종으로 확대 ·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정보화 중점 지원 - 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· 개인정보 보호, 거래 양식과 규칙의 제정, 분쟁 조정 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
국민연금법중개 법률(안) 입법예고	보건복지부 (8.1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 대상 사업장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→ 1인 이상 사업장 (2002년 7월부터) -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 제외 대상: 23세 미만 무소득자 → 27세 미만 무소득자 - 임의계속가입자의 65세 도달로 인한 자격 상실 조항 폐지 - 경기 변동과 연금 수령액의 연동성 강화 - 적립 기금의 위험 분산을 위하여 외부 위탁 투자, 뮤추얼펀드 투자 등 투자 대상 다변화
지역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센터 설치 추진	중소기업청 (8.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광역 및 공업 지역별로 지원센터 설립 - 개별 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맞는 단계별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- 특화된 고급 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전문 교육 실시
「국민의 정부」 제2기 경제 운용	경제정책 조정회의 (8.2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경제시스템의 정립,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, 생산적 복지 추진과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의 기존의 정책 과제들을 지속·마무리 - 최근에 성과를 보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고 미국, 중국, 일본 등과 대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

주요 정책 정보(2000. 8. 24 ~ 8. 31)

8.25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정거래위원회) 지적재산권 심사 지침 발표 - 지적재산권은 제도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며 공정 거래 정책(독점금지 정책)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국민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, 두 정책이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-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이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임 · 따라서 금번 심사지침에는 특허권자가 특허사용권을 주면서,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,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강요하거나 거래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될 것임
---------	--